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및 신고태도 연구

- 일반여성과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eople's Perception and Accusation of Child Abuse

- Focused on General Women and Preschool Teachers -

200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유 경 숙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및 신고태도 연구

- 일반여성과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eople's Perception and Accusation of Child Abuse

- Focused on General Women and Preschool Teachers -

위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유 경 숙

유경숙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정함

200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종수 

심사위원 이창진 

심사위원 黃振洙 

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허용되어 왔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훈육을 단순한 가정사 내지는 부모 소유물에 대한 통제 정도로 여겨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은폐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아동으로 이러한 폭력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1391)를 설치하는 등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수는, 발생되고 있는 학대 사례수 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또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신고가 더 많은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여성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관련 신고 지식 및 신고태도의 수준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일반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 2)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신고지식, 신고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3)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를 위해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 까지 20일간 서울시내의 각기 다른 구에 위치한 여성발전센터와 복지관의 수강생인 일반여성 95명과 구립어린이집 교사 102명 등 총 19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은 체벌에 사용하는 도구와 강도에 따라 신체학대와 체벌이 구분된다고 응답하여 손이나 회초리를 사용하여 체벌하는 것은 정당한 부모의 훈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반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모두 높게 나타나 집단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학대 관련 신고 지식이나 신고태도의 수준에서 보육교사들이 일반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일반여성과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된 정보의 대부분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되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게 나타났지만 신고절차나 신고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스컴뿐만 아니라 세미나나 교사보수교육,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신고지식이나 신고태도의 수준은, 법 시행이전의 기존 연구결과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태도는 중간수준으로 이에 대한 교사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및 방법	4
제 2 장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6
1. 아동학대의 정의	6
2. 아동학대의 유형	9
제 2 절 아동학대의 원인	14
제 3 절 아동학대관련법규 및 아동보호체계	20
1.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20
2. 현행 아동보호체계	22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25
제 3 장 연구방법	29
제 1 절 조사방법	29
1. 조사대상	29
2. 자료수집방법	29
제 2 절 조사도구 및 구성	30
1. 조사도구 및 구성	30
2. 척도의 신뢰도	30
제 3 절 자료분석	31

제 4 장 결과분석	32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1. 조사대상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33
제 2 절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35
1.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	35
2.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	36
제 3 절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	37
1.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37
2. 아동학대의 신고지식	42
3. 아동학대의 신고태도	44
4. 조사대상집단의 심각성 인식,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	47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48
제 4 절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방안	51
1.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로	51
2.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기관	52
3. 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	5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5
제 1 절 결 론	55
제 2 절 제 언	58
참고문헌	60
설 문 지	64
ABSTRACT	70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의 보도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대시켰다.

우리 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아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허용되어왔고,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왔기 때문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훈육을 단순한 ‘가정사’ 내지 ‘부모 소유물에 대한 통제’ 정도로만 여겨지고, 대부분의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 숨겨진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행하여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못하고 은폐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부모에게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자녀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자녀로서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보다 적극적

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보건복지부, 2000)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대해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외면된 아동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정사항을 내린(연합뉴스, 2003. 2. 4)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토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10월에는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를 개통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신고되는 아동학대수는 실제 발생하는 아동학대수보다 훨씬 밀들며, 또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신고보다 극히 저조하다

미국의 경우 2001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백67만3천 건으로 이는 아동 전체인구 7천2백94만1천명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경향신문, 2003. 5. 2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우리 나라의 2002년 아동학대 신고 사례수(1391 접수)는 2,946건으로 2001년 2,606건에 비해 13%가량 늘었지만 잠재 아동학대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이는 전국 18세 이하 아동인구수 대비 잠재학대 아동수는 44만 9천여명으로 잠재학대 아동수 대비 신고율은 채 0.5%에 불과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아동학대 신고자를 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전담공무원, 교사, 의료인)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부모, 이웃/친구, 친인척, 경찰, 종교인, 아동본인, 기타)로 구분하여 볼 때,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신고가 전체의 71.6%인 2,108건이었으며, 오히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8.4%인 833건에 불과해 신고의무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명으로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5세 이하의 어린아이이며,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아이들의 죽음은 아동학대의 조기신고와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경향신문, 2003. 5. 26).

특히 신고된 사례중 '거의 매일' 학대가 39%(96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피학대 아동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후유증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동의 특성상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감시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길게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예비부모가 될 일반여성은 물론, 하루의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보내는 보육교사는 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할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도모하고 동시에 아동을 양육에 부적합한 환경으로부터

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여하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신고태도 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여성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신고지식과 신고태도를 갖고 있으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여성들과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관련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 1)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은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에 대한 차이는 있는가?
2.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는 어떠한가?

- 1)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는가?
3.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국내외 주요문헌과 학위논문 및 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및 유형과 발생원인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법규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의 일반적 인식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시기는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 까지 20일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여성 110명과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10명 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며, 학문적으로 정의한 학대의 개념이 실제 어떠한 아동을 학대받은 아동으로 보고 이에 개입할 것인가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아동학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각 문화권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태도, 기준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대란 명확히 규정되어진 행동이 아니며, 또한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규범 또는 표준에 의하여 정의되고 사회의 계층 또는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성예, 1992)

아동학대를 정의하는데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아동학대를 개인적 차원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 차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의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부모의 학대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학대결과 중에서 심리적인 상처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상처에 초점을 두고 볼 것인가의 문제 등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 현상이 여러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편협된 작업이고, 여러 요소들을 한 차원에서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규정을 유발하는 원인과 행위 그리고 결과라는 다차원적 모형으로 고려해야 만이 정확하

고 포괄적인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정의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의학적·법적·사회복지적 접근이 있다.

첫째, 의학적 접근은 아동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은 물론, 부모의 병리 현상도 치료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학대를 정의한다. 이런 접근은 학대범위를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협의의 정의와 관련된다.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1961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을 때, 대개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신체적인 학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했기 때문이다(Gil, 1971).

그러나 이 정의는 학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상처를 입은 아동과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학대 아동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며, 관찰 가능한 상처가 없는 학대아동을 배제하게 하는 한계점이 있다(허남순, 1993).

둘째, 법적 접근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양육에 있어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법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된다. 즉 아동학대를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그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건강과 복지에 해를 입거나 이를 위협하는 환경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손상,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Nelson, 1984; 장화정, 1998 재인용).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동법 제29조에서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행위조항으로 명시하여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 2000).

셋째, 사회복지적 접근은 주로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에 의해 사용되는 정의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Gi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태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소극적인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잘못 외에도 사회의 행위와 태만을 포괄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 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해’ 이외에 ‘잠재적인 해’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정의들은 모두 학대를 ‘아동에게 입히는 해’라고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위의 결과로서의 학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이 각기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시대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아동학대 정의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정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협의의 정의는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넓고 포괄적인 정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근원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유도하여 광범위한 예방적 개입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신영화, 1986)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서로 대립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입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완적 정의가 필요하다(장화정, 1998).

본 연구자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의 일차적 예방에 초점을 두어 아동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인 제 수준 일반과 구성원의 적극적 학대행위와 소극적 방임을 포함하여 그 유형에 있어서 신체, 정서, 성 학대 및 방임과 영양 실조, 의료적, 교육적 방임 및 유기 등 아동발달의 전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된 학대의 정의는 현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적 정의를 차용하기로 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개정 아동복지법 제 2조 4항의 아동학대의 정의를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가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홍강의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신체학대, 신체방임, 정서학대, 정서방임, 교육

방임, 성 학대, 아동유기로 나누고 있다(안동현·홍강의, 1987).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적용하는 법적 정의에 의한 학대영역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학대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신체학대는 Kempe와 그의 동료들이 19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히는 현상'이며, 신체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타박상, 화상, 두골상해, 뼈를 부러뜨림, 복부의 상해는 의료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Helfer, R & Kempe, H., 1974). 즉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신체학대이며 이는 확연한 손상을 가져오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대와 체벌 사이의 경계에 관한 개념 정의가 매우 모호한데 우리 사회는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적인 체벌들은 대체로 용납되었고 오히려 장려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한국 부모 90%이상이 아동에 대한 관심과 훈육의 표현으로 체벌을 해 왔으며 '사랑의 매', '교육의 매'라는 명목으로 당연시되어 왔다(홍강의, 2001). 체벌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아동의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고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기도 한다.

신체학대의 후유증으로는, 외상으로 두개골·코·얼굴부위의 골절 및 복부 상해, 고막파열, 화상, 시력상실, 할퀴거나 깨문 상처 등이 있다.

심리적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살기가 싫다고 말하며,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학습부진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두통, 식욕부진, 말더듬, 빈뇨, 복통 등을 호소하며,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정서학대란 언어적,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 또는 감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나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박태수, 2000). 정서학대는 신체 학대같이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모욕적인 행동, 거부적으로 대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을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 행위에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즉 정서학대는 주로 신체학대에 수반되어 발생하는데 주로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다. 외상이 없어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지만 아동의 심리, 사회, 정서 지적발달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대의 후유증으로는 낮은 자존심, 발달지체, 자살행동 등을 보이기도 하고 도덕발달의 결함을 보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거의 웃지 않고 놀지 않으며 깊이 잠들지 못한다.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 관심을 끌려고 하며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인다.

3) 성학대 (sexual abuse)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9조 2항에 보면 성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근친상간의 성 학대는 부모와 아동의 특징적인 사회·심리적 역할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수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다 심각하게 된다. 성학대에 대한 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11-14세 아동 중 5.8%가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1.9%가 성기노출, 0.8%가 추행, 1.7%가 강제 입맞춤, 1.4%가 강간이었다고 보고되었다(신영화, 1986). 그리고 1999년 한국이웃사랑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14,695명 가운데 14.6%가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 2000). 또한 2002년도 신고된 성학대 사례를 보면, 성추행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성기삽입이 15.8%로 전년도에 비해 성추행과 성기삽입의 비율이 낮아진 반면, 성놀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9%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성학대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3.2%, 119명), 성학대 특성상 외견으로 노출이 안되고, 피학대자 가족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여 실제 신고되는 수 보다 신고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학대에 비해 후유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복부통증, 구토, 요도관 감염, 외음부의 출혈 및 상

처, 성병 등이 나타나며 갑작스런 체중감소나 증가를 보이고 수면장애, 강박적인 자위행위, 조숙한 성적놀이 등을 한다. 퇴행, 배변훈련의 실패, 잦은 목욕, 그리고 원인없이 울거나 집안에만 머물려고 하며, 우울증을 보이고,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하고 자기 파괴적 행동과 자살 행동, 성 범죄, 약물남용에 쉽게 빠지는 등의 후유증을 보인다.

4) 방임(neglect)

방임은 아동에 대한 의무를 태만시하는 경우로 영양부족, 부적절한 위생 관리, 교육적 무관심,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의 부족 등이 일어났을 때라고 정의하였다(윤난호, 1995). 즉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동방임은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협하기까지 하다. 또한 신체학대는 일시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방임은 장기적인 경향이 있다(김지윤, 2000).

방임의 유형으로는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유기 및 가출아동을 찾지 않거나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것 등의 형태가 있다.

2002년도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방임은, 전체 사례 중 36.3%인 1,329명으로, 아동에게 의식주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거나,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지내게 하는 '물리적 방임'이 53.1%(98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출아동을 찾지 않는 경우와 아동을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경우도 각각 8.7%(161명)와 3.1%(57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방임을 자주 경험하는 아동들은 방과후에 집에 가지 않고 서성거리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 2 절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체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관점을 포괄한 생태학적 접근이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아동학대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부모 또는 아동의 특성으로 학대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다. 먼저 부모의 특성으로는, 학대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결함이 직접적인 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비정상적인 정서적,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경험 즉 적대, 비난, 처벌, 무시, 복종, 과잉기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된다. Faller, K. C. (1981)는 부모의 아동학대 요인으로 정신병, 우울, 정신지체, 약물남용, 학대받은 양육 경험, 사회적 고립 등을 들고 있으며, 학대하는 어머니가 비학대 어머니에 비해 무능력하고, 의존적 욕구가 강하며, 정서적 박탈을 심각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정한 정신이상보다는 아이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부적절한 양육방법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이종복·이배근, 1997).

아동의 특성으로 아동학대를 설명하는 입장은 아동을 둘러싼 수많은 요인들이 아동학대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동이 의도적으로 학대를 유발하는

지에 대한 추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학대받는 아동에게는 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특성이 있다(Kolko, 1996: 장화정, 1998 재인용). 학대 유발원인으로는 기질, 건강과 의료상의 문제, 장애 및 발달 지체, 문제행동, 출생상황 등을 꼽는다. 다루기 힘든 충동성, 잦은 울음과 같은 기질적인 특성은 부모로 하여금 체벌에 의존한 훈육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며, 흔히 까다로운 아이(difficult child)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보다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천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학대아동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주변사람 및 사물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수준이 일반 정상아에 비해 현격히 낮아서 부모나 대리양육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좌절감을 주기 때문이다(표갑수, 1993).

그러나 아동특성을 학대유발 원인으로 가정한다면, 학대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킴과 동시에 아동에게는 모든 문제를 가중시켜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상처와 더불어 마음의 죄의식까지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므로 신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한편, 아동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발달단계에서 일어나며, 발달단계별로 그 양상이 다르다고 보아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이 학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입장이다. 각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이 갖는 특성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역기능적일 때, 학대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가족 내 요인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가족 내 요인으로는 실직이나 빈곤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 내 역동성을 들 수 있다. 실직이나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아동에게 표출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동학대와 빈곤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미국의 전국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1988년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무려 7배나 높았으며, 빈곤가족의 자녀들은 특히 방임되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 발생하는 학대의 수준도 저소득층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Downs, Costin, McFadden, 1996; 안재진 2002 재인용).

이 밖에 가족 내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작용이 아동학대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대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적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는 애정어린 행동이나 지지적 행동이 대조군에 비해 40%나 적었고 위협과 불평 등 부정적 행동은 60%나 더 많았다고 나타났다(표갑수, 1993). 부모-자녀의 상호작용도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부부간의 상호작용도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부부간의 폭력이 빈번한 가정의 아동은 더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숙, 1991; 한국이웃사랑회, 2000 재인용). 이 밖에 결탁(collusion), 삼각관계, 속죄양 등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교류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양부모, 재혼가족, 결손가정, 확대가족, 미성년 부모 등의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결손가정에서는 부 또는 모가 부모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학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Faller는 미성년 부모의 경우 책임감이 약하고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의 위험성이 크고 자신들이 달성하지 못했던 성취를 아동에게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동기로 인해 아동의 욕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신들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이종복·이배근, 1997).

3) 사회문화적 요인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체벌, 폭력, 아동양육에 대한 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아동과 성인의 상호작용 유형에 있어 그 사회의 우세한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양육태도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에 사회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태도는 간접적으로 아동학대의 발생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의 연구들은 체벌적 훈육이 신체적 학대의 강한 위험지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전통적 유교문화에서는 조금 큰 아이들에 대한 '위협, 심하게 꾸짖는 것, 체벌' 등이 모두 명백히 허용되고 자주 사용되는 훈육 기술이다(Liu & Lau, 1999).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의 지속은 그 사회의 아동들을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

한편, 사회가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족의 영역이 점차 사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폐쇄됨으로써, 아동의 양육 또한 점차 사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생활의 고립화 현상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동시에 부모로 하여금 거의 사회적 규제나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게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은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으로 기여한다.

4) 생태학적 관점

아동학대를 아동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사이의 다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문제로 보는 입장으로, 환경의 개선으로 아동학대가 부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낙관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성혜, 1992).

Belsky, Jay. (1980)는 환경을 미시체계, 외계체계, 거시체계 등 3체계로 구분하였으며 개체의 발달적 특성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4요소간의 상호작용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Belsky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되므로 무엇보다도 미시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미시 체계에 속하는 주요변수로 부부간의 갈등, 적응, 권력구조,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 가족크기, 부부2인 체계로부터 부모체계로의 성공적 변화와 실제의 처벌이외에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성, 즉 신체장애아, 원하지 않는 자녀 등의 변수도 미시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성의 자녀이거나 자녀의 유별난 행동이나 기질을 보이거나 결함이 있을 때, 부모가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양육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됨으로서 자녀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부부 체계내의 긴장, 분노와 욕구 불만이 팽배하고 불화상태일 때 에너지를 방출할만한 만족스러운 출구가 없어 자녀 체계로 표출되거나, 부부관계의 절망감을 자녀에게서 보상받고자 하는 가운데 부모의 자녀학대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김재엽(1998)의 연구에 의하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은 아동을 동시에 학대하고,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내 역시 아동학대를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부간의 상호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모두 아동에게 높은 폭력성을 보였다.

외계체계수준은 인간을 포함한 근접 환경을 둘러싸고 있지만, 인간이 포함되지 않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구조로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가장 언급되는 변수는 사회계층, 빈곤, 실업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아동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하거나, 체벌을 허용하는 태도라면 이는 미시, 외계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거시체계 수준은 다른 하위 체계에 영향을 주는 체계로 사회제도나 사회의 가치관, 신념, 제약 등을 말하며 문화권내에서 수용되는 폭력과 체벌 수준, 사회에서의 아동관, 성 역할 고정관념과 대공황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동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하거나 체벌을 허용하는 태도라면 이는 미시, 외계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개체발생적 수준은 학대자의 인성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Belsky는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경우에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Belsky는 이상의 각 체계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체계간의 요인이 연합되는 경우에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의 발생에 관한 다양한 원인을 통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앞으로의 경험적 연구를 안내할 변수를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고 생태학적 접근법의 체계를 발전시켰다.

Gelles, R. J. (1973)는 사회환경이 아동학대를 설명하는 필요하고도 충분

한 조건이라고 하며,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와 사망에 의한 별거나 이혼 등의 결손가족 그리고 저학력 또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들은 훈육 행동시 감정을 배제시키기 못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왜곡반응으로서 자신의 분노와 갈등을 아동에게 투사하는 부적절한 양육태도의 잠재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아동학대가 다요인의 산물인 점을 고려하였다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제 3 절 아동학대관련법규 및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아동학대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 협약에 1991년에 가입함으로써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생존·보호·발달원칙, 아동참여원칙’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1996년 OECD 가입국이 되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장옥주, 2000). 이러한 사회적·국제적 분위기에서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아동보호체계가 급속하게 확립되어 가고 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고, 이는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후속적인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주된 내용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규정의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4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신체학대(physic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방임(neglect)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4조에서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3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

동복지법 제40조는 아동학대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정의를 내리고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를 만든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2000년의 법개정 이전에 오랜 기간동안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여왔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을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 주장하여왔던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된 아동학대법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파격적인 법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체계의 마련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형모, 2000).

2. 현행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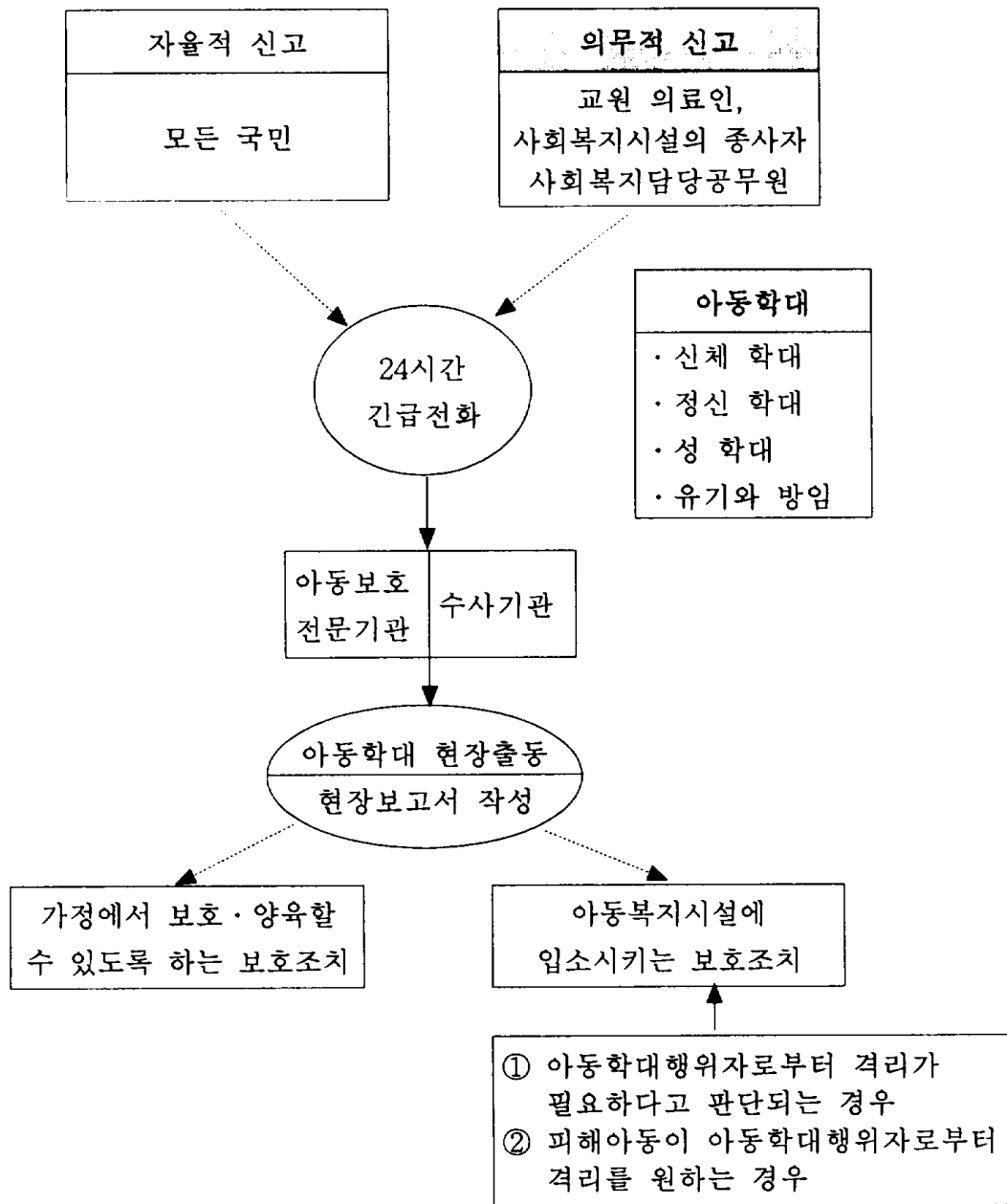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일반 국민에 의한 아동학대의 자율적인 신고와 전문가들에 의한 의무적인 신고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아동학대가 신고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의 신고는 개정된 아동복

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2000년 9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로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용전화를 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7조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의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는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출처 : 김형모, 아동보호체계의 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를 한 이재연·한지숙(2000)에 의하면, 부모들이 유아기나 학령기의 발달특성 및 아동행동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인해 체벌이나 구타, 정서학대 등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하는 어머니가 아동학대 가능성이 크며,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주변에 도와줄 친·인척이 없거나 좋은 정보나 충고를 제공받지 못할 때 등의 경우에 아동을 학대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결국,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동 및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가족환경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

김혜영·장화정(2002)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중 신체학대는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체벌은 매우 유용한 아동훈육 수단으로, 체벌과 신체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신체학대와 훈육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세대간 전수가 이어진다고 보고있다. 또한 상당수의 부모들이 방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제로 아동을 방임하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행동으로 여기기 쉽다고 한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등의 각 문항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인식한 비율이 87%로 높게 나타났지만, 방임의 경우는 의료

적 방임을 제외하고 50%정도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50%수준이고, 아동학대긴급전화(1391)를 알고 있는 비율은 3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알게된 경로로는 대부분이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얼굴이나 머리 등을 때리면 아동학대라고 87%가 인식하고 있지만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는 30%만이 아동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신(200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2.4%)이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일반인들의 대처방법은 모른척한 것이 무려 34.8%에 달하였고,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진(2002)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70%가 아동학대 신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실질적인 신고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물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신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마송희·지성애(2000)는 유아학대 증후군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대유형중 방임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성 학대 증후를 가장 늦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학대 증후를 식별할 수 있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연령 중에서 25-29세가 유아교사 직전교육에서 학대관련 교과목을 '다른 교과에서 부수적'으로 수강하였다고 하며, 교육경험이 많은 30세 이상의 교사일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현지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유아를 학대하는 원인에 대해서 '잡은가정불화', '부모의 알콜 및 약물중독', '부모의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연(2000)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은 매우 높은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53명 중 5명만이 신고를 했으며,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동학대의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서', '현재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아동학대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Levin(1983)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 증후군중 신체학대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고, 성학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적었는데, 교사의 지식과 신고 경험의 순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 빈도가 서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학대에 따른 증상과 특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고하는 빈도가 높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옥(2002)의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았으나 현직교사보다 예비교사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빗자루나 회초리에 대한 반응은 다소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유형별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신체학대였고, 방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학대나 정서학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하는 시간이 길수록 예비교사보다 현직교사의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이 떨어지는 결과에 대해 현실에만 급급해 하는 열악한 보육현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사의 70%정도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 필요성은 98.8%가 인식하고 있지만 피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방식으로 '모른 척 했다'도 15.5%나 응답되어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태도에 미치는 연구에서 유만수(2000)는 가정폭력

방지법은 정부가 법으로 문제해결의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구타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서비스 규정 등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경우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Liu & Lau(1999)는 신고를 귀찮게 여기는 정도,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도,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지 여부 등이 신고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허남순(1999)은 부모는 본능적으로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음과, 부모가 아동을 체벌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한 존중, 신고가 아동이나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나 제도에 관한 것 등을 알지 못할 때 신고를 꺼린다고 한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신고의무자나 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신고지식, 신고태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신고의무자와 비 신고의무자를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기에, 신고의무자와 비 신고의무자의 인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에 알아보는 연구는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들을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의 각기 다른 구(동작구, 광진구, 은평구)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10명과 일반여성(동작구, 광진구, 은평구의 복지관 및 여성발전센터 등의 수강생) 110명 총 220명을 연구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서울시 25구 중 3곳(동작구, 광진구, 은평구)을 조사대상지로 선택한 것은 이들 구가 대체로 중하위 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방법

조사는 2003년 10월2일부터 10월 22일 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연구자가 전화로 협조를 구한 후 방문하여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197부(일반여성 95부, 보육교사 102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제 2 절 조사도구 및 구성

1. 조사도구 및 구성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와 신고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아동학대의 일반적 인식으로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부분은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16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부분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신고지식 항목은 3문항이며, 넷째 부분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태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긍정적 측면 7문항과 부정적 측면 7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섯째 부분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3문항으로, 여섯째 부분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넷째 부분의 7번부터 14번까지 문항은 역점수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을수록 신고태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척도의 신뢰도

본 조사에서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척도의 신뢰도는 .95 이상이며, 아동학대의 신고태도를 묻는 척도의 신뢰도는 .77이상으로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3 절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주요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신고제도의 활성화방안 알아보기 위해 Friedman's 우선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결과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일반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연령, 종교, 결혼여부 및 자녀수, 성격, 혈액형, 최종학력에 대한 것으로 다음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일반여성은 40대 이상이 49.5%, 30대가 32.6%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연령은 30대가 50.0%, 20대는 36.3%를 보여 두 집단의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차이($\chi^2=29.927$, $p=.000$)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여성은 여성발전센터와 복지관의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40대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는 직업의 특성상 20대와 30대의 젊은 인력이 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두 집단 모두 '가지고 있다' (66.3%, 69.6%)라고 대답하여, 종교가 있는 비율이 종교가 없는 조사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여부에 관한 것을 보면, 일반여성은 기혼이 61.1%로 58명, 미혼이 38.9%로 37명이며, 보육교사는 미혼이 78.4%로 80명, 기혼이 21.6%로 22명으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31.795$, $p=.000$)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특성상 미혼이 많이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 두 집단의 자녀수를 보면, '1명 있다'는 일반여성이 30.2%로 13명, 보육교사는 33.3%로 5명이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여성이 69.8%로 30명, 보육교사는 66.7%인 10명으로 집단간 분포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여성은 62.1%, 보육교사는 61.8%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외향적인 성격은 일반여성은 37.9%, 보육교사는 38.2%를 차지하여, 두 집단 모두 내향적인 성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혈액형을 살펴보면 일반여성은 'A'형이 34명으로 35.8%, 'B'형이 26명으로 27.4%를 나타냈고, 보육교사는 'O'형이 32명으로 31.4%, 다음이 'A'형이 30명 29.4%를 나타냈다.

최종학력을 보면, 대학(재학중 포함)졸업이 일반여성은 49.5%로 47명, 다음으로 고졸이 17.9%인 17명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48.0%인 49명이 전문대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재학중)졸업이 43.1%로 44명으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비율이 91%이상 차지하고 있어 두 집단의 최종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27.500$, $p=.000$)가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대학이상에서 유아교육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육교사들에서 고졸이 8.8%가 나타난 것은 고졸이후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응답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 조사대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N = 197		
특 성	구 분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검증결과
		(N=95)	(N=102)	
		N(%)	N(%)	
연 령	20대	17(17.9)	37(36.3)	$\chi^2 = 29.927$ $p = .000^*$
	30대	31(32.6)	51(50.0)	
	40대 이상	47(49.5)	14(13.7)	
종 교	유	63(66.3)	71(69.6)	$\chi^2 = .245$ $p = .621$
	무	32(33.7)	31(30.4)	
결 혼 여 부	미 혼	37(38.9)	80(78.4)	$\chi^2 = 31.795$ $p = .000^*$
	기 혼	58(61.1)	22(21.6)	
자 녀 수	1명	13(30.2)	5(33.3)	$\chi^2 = .050$ $p = .823$
	2명 이상	30(69.8)	10(66.7)	
성 격	내 향 적	59(62.1)	63(61.8)	$\chi^2 = .002$ $p = .961$
	외 향 적	36(37.9)	39(38.2)	
혈 액 형	A	34(35.8)	30(29.4)	$\chi^2 = 2.246$ $p = .523$
	B	26(27.4)	24(23.5)	
	AB	13(13.7)	16(15.7)	
	O	22(23.2)	32(31.4)	
최 종 학 력	고 졸	31(32.6)	9(8.8)	$\chi^2 = 27.500$ $p = .000^*$
	전 문 대 졸	17(17.9)	49(48.0)	
	대졸(재학중포함)	47(49.5)	44(43.1)	

제 2 절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체벌과 신체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사항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

<중복응답>

구 분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N(%)	N(%)
아이의 연령에 따라	28(10.5)	14(4.7)
체벌의 강도에 따라	40(15.0)	56(18.9)
체벌을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52(19.5)	49(16.6)
신체부위에 따라	34(12.7)	40(13.5)
상처의 정도에 따라	27(10.1)	26(8.8)
부모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44(16.5)	55(18.6)
아동의 잘못 여부에 따라	34(12.7)	46(15.5)
모든 체벌은 신체학대임	7(2.6)	9(3.0)
기 타	1(.4)	1(.3)
합 계	267(100)	296(100)

일반여성의 19.2%인 52명이 체벌과 신체학대는,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구분기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16.5%인 44명은 부모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음으로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15.0%인 40명이 응답하였고, 보육교사는 18.9%인 56명이 체벌의 강도에 따라, 18.6%인 55명이 부모

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16.6%인 49명이 체벌을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15.5%인 46명은 아동의 잘못여부, 13.5%인 40명은 신체부위에 따라서 체벌과 신체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처의 정도에 따라 구분기준으로 본다는 응답이 일반여성이 10.1%인 27명 보육교사는 8.8%인 26명이 응답하고, 연령에 따라 구분기준이 된다고 일반여성은 10.5%인 28명이 응답한 반면, 보육교사는 4.7%인 14명에 불과하여 다른 구분기준에 비해 낮은 응답율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신체학대의 기준을 볼 때 상처정도와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 가하는 체벌은 신체학대로 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타나, 일반여성뿐만 아니라 유아의 양육과 안전을 부모대신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두 집단 모두 가정불화와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여성을 살펴보면, 가정불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아동을 학대한다고 37.7%(152명)이 응답하였고, 무관심·무책임이 16.4%인 66명, 편모·편부 가정이 학대원인이라고 14.1%인 57명, 다음이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1.2%인 45명이 응답하였다. 보육교사를 보면, 가정불화와 경제적 빈곤이 40.1%(168명), 무관심·무책임이 17.7%인 74명

으로 일반여성과 학대원인에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편모·편부 가정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일반여성은 14.1%인 57명인데 보육교사는 9.1%인 38명이 응답하여, 일반여성에 비해 보육교사들은 편모·편부 가정이 아동학대 유발 원인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표 4.3> 아동학대 발생원인

구 분	<중복응답>	
	일반여성군 N(%)	보육교사군 N(%)
가정 불화	84(20.8)	91(21.7)
경제적 빈곤	68(16.9)	77(18.4)
무관심·무책임	66(16.4)	74(17.7)
편모·편부 가정	57(14.1)	38(9.1)
부적절한 양육태도	45(11.2)	64(15.3)
지나친 기대	37(9.2)	34(8.1)
아동기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	42(10.4)	41(9.8)
기타	4(1.0)	.
합 계	403(100)	419(100)

제 3 절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

1.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1) 신체학대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집단이 일반여성 집단보다 신체학대 인식점수가 약

간 높은 것으로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4> 신체학대의 심각성 인식 차이

N=197

문 항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M (SD)	M (SD)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	2.94 (.99)	3.15 (.89)	-1.598	.119
얼굴이나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경우	4.16 (.83)	4.26 (.89)	-.870	.385
아동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경우	4.47 (.89)	4.61 (.85)	-1.087	.278
칼이나 흉기로 아동을 위협하는 경우	4.83 (.77)	4.82 (.79)	.073	.942
혁대로 아동을 때리는 경우	4.83 (.72)	4.80 (.80)	.253	.799

칼이나 흉기로 아동을 위협하는 경우, 혁대로 아동을 때리는 경우 등 무기를 사용하여 아동을 위협하거나 때리는 경우, 두 집단이 모두 매우 심각한 학대라고 인식하며 일반여성은 4.83이상, 보육교사는 4.82이상의 평균을 나타냈다. 그러나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린 경우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것은 보육교사가 3.15의 평균을 보이고 일반여성은 2.94의 평균을 보여 다른 신체학대의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체벌을 허용하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아동을 훈육할 때 손이나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손이나 회초리를 사용하여 학대를 하는 것은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정서학대

정서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점수는 <표 4-5>와 같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5> 정서학대의 심각성 인식 차이

N=197

문 항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M (SD)	M (SD)		
아동에게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원수야' 등의 욕을 하는 경우	3.98 (1.01)	4.28 (.92)	-2.225	.027*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	4.29 (1.02)	4.63 (.87)	-2.475	.014*
아동에게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	4.31 (.99)	4.37 (.90)	-.500	.618
아동을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경우	4.18 (1.01)	4.25 (.97)	-.469	.640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정서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수준을 보면, 아동에게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등의 욕을 하는 경우의 인식점수는 각각 3.98과 4.28의 평균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t=-2.225$, $p=.027$)가 나타났으며,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 '갖다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에서도 각각 4.29, 4.63의 평균점수가 나타나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475$, $p=.014$)가 나타났다.

정서학대 문항중 일반여성은 아동에게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경우 평균이 4.31로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는데 비해,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심각

한 정서 학대로 4.63의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것보다 욕이나 심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비록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을지언정 마음의 상처가 더욱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여성들이 정서학대 문항 중 3문항에 대해 표준편차가 1.01이상을 보여, 전혀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임

방임에서 일반여성과 보육교사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표 4-6>와 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 6> 방임의 심각성 인식 차이

N=197

문 항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M (SD)	M (SD)		
아동을 늦은 밤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경우	3.80 (1.04)	4.00 (.93)	-1.424	.156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4.03 (1.02)	4.13 (.95)	-.684	.495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	4.33 (.89)	4.46 (.86)	-1.074	.284
아동이 이유없이 어린이집 등을 결석해도 아무말 하지 않는 경우	3.97 (.93)	3.78 (.90)	1.416	.158

방임은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두 집단이 모두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의 의료적 방임에 대한 인식점수가 일반여성은 4.33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보육교사는 4.46의 평균점수를 보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매스컴 등에서 의료적 방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하여 아동이 아플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여성은 '아동이 이유없이 어린이집 등을 결석해도 아무말하지 않는 경우' 보육교사는 '아동을 늦은 밤까지 혼자 집을 보는 경우'를 세 번째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과,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핵가족화 되고 소자녀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이외는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관계로 아동을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경우는 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 어느 정도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4) 성학대

두 집단 모두 성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방임이나 정서학대의 인식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표 4-7> 과 같이 두 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에게 음란비디오나 음란 서적을 보여주는 경우에 일반여성은 4.74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 보육교사는 4.76의 평균을 보여, 성학대의 심각성에서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의 몸을 만지는 경우에 두 집단이 평균 4.5 이상의 높은 인식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에서 모두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인 '어른이 억지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를 보면 외국에선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에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4- 7> 성학대의 심각성 인식 차이

N=197

문 항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M (SD)	M (SD)		
어른이 아동에게 음란비디오나 음란서적을 보여주는 경우	4.74 (.76)	4.76 (.81)	-.243	.804
아동이 싫어하는 데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경우	4.53 (.92)	4.68 (.85)	-1.193	.234
어른이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	4.19 (.98)	4.18 (.98)	0.93	.926

2. 아동학대의 신고 지식

아동학대와 신고지식에 대한 문항은 3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예'라고 답한 경우는 1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1'에 가까울수록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4-8>에 보면, 전체적으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t=-4.285$, $p=.000$)를 보였으며,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의 문항에서 보육교사들이 .74의 평균을 보여, .56의 평균을 보인 일반여성군과 유의미한 차이($t=-2.641$, $p=.009$)를 보였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평균점수 .74는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고있는가' 항목에선 보육교사의 평균이 .92로, 일반여성의 .78보다 평균에서 .14의 차이($t=2.887$, $p=.005$)를 보이고 있고, '학

대아동 발생 시 신고여부'의 문항에서도 보육교사가 .90의 평균을 보여, 일반여성의 평균 .68 보다 높게 나타나 문항별로도 차이($t=-3.923, p=.000$)를 보였다.

즉 아동학대 관련 신고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보육교사들이 일반여성들 보다 지식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학대관련 교과목을 수강했거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관련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8> 조사대상 집단의 신고지식 차이

N=197

문 항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범 위
	M (SD)	M (SD)			
귀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6 (.50)	.74 (.44)	-2.641	.009*	0=아니오 1=예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8 (.42)	.92 (.27)	2.887	.005*	
만약 귀하가 보살피는 아동이나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외부기관에 신고하시겠습니까	.68 (.47)	.90 (.30)	-3.923	.000*	
전 체	.63 (.33)	.85 (.25)	-4.285	.000*	

3. 아동학대의 신고태도

조사대상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이나 가해부모, 신고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신고태도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과 신고의 부정적 측면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고의 부정적 측면의 항목은 응답한 점수를 역점수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신고태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표4-9>와 같이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에서 유의미한 차이($t=-2.006$, $p=.046$)가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로 평균점수는 일반여성이 3.98, 보육교사는 4.02를 보여 가장 높은 신고태도의 수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여성은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아동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의 항목에 3.79의 평균을 보였고, 보육교사는 3.80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가장 낮은 신고태도의 수준을 보인 것은 '아동학대 신고절차를 잘 알고 있다' 항목에 일반여성은 2.31의 평균을 나타냈는데 보육교사도 평균 2.43을 나타냈고, 표준편차는 일반여성이 1.06, 보육교사는 1.01로서 신고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문항별로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의 문항에서 일반여성은 2.73의 평균이 나타났고, 보육교사는 3.08의 평균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t=-2.146$, $p=.033$)가 나타났으며,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 생각한다'에 일반여성은 2.92의 평균이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는 3.40의 평균을 나타내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

($t=-3.570$, $p=.000$)가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해도 신고하는 것이 귀찮다'에서 유의미한 차이($t=-3.313$, $p=.001$)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여성의 평균이 3.43인데 표준편차가 1.20으로 보육교사의 평균 3.94, 표준편차는 .95로 일반여성집단에서 신고를 매우 귀찮게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태도 조사결과, 신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신고태도는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신고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생각인 신고하는 것인 귀찮고,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걱정,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다 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신고태도는 보육교사가 일반여성보다 낮게 나타나, 보육교사들이 신고에 대해 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여성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태도는 중간수준으로 아동학대 심각성의 인식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학대의 심각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신고태도의 수준은 심각성의 인식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부분의 <표 4-8>과 같이 일반여성의 70%정도와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신고제도를 알고있고, 피학대 아동 발견시 신고하겠다는 의도는 갖고 있지만 신고태도는 중간수준을 나타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와 관계 없이 신고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조사대상 집단의 신고태도 차이

N=197

문항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범위	
	M (SD)	M (SD)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3.32(.94)	3.29(.87)	-.484	.629	1=전혀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3.14(.99)	3.27(.87)	-1.067	.287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3.37(1.05)	3.14(1.02)	1.569	.118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3.98(.90)	4.02(.76)	-.344	.731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아동권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3.79(1.13)	3.80(.94)	-.098	.922		
아동학대 신고절차를 잘 알고 있다	2.31(1.06)	2.43(1.01)	-.854	.394		
부모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85(1.16)	2.93(1.03)	-.506	.614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	2.73(1.20)	3.08(1.11)	-2.146	.033*		1=매우 그렇다 3=그저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 생각한다	2.92(1.05)	3.40(.86)	-3.570	.000*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도 신고하는 것이 귀찮다.	3.14(1.20)	3.94(.95)	-3.313	.001*		
신고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2.94(1.16)	3.16(.86)	-1.519	.130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이나 비난을 받을 까봐 부담스럽다	2.92(1.15)	2.97(.93)	-.368	.713		
신고를 할 때 신분이 노출될 까봐 부담스럽다.	2.82(1.09)	2.92(1.02)	-.668	.505		
신고를 함으로써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3.09(1.17)	3.20(1.12)	-.622	.534		
전체	3.10(.55)	3.25(.47)	-2.006	.046*		

4. 조사대상 집단의 심각성 인식,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심각성 인식과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의 차이를 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조사대상 집단의 변인별 차이

N=197

변 인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t	p
	M	SD	M	SD		
심각성 인식	4.22	.63	4.32	.71	-1.010	.314
신고지식	.63	.33	.85	.25	-4.285	.000*
신고태도	3.10	.55	3.25	.47	-2.006	.046*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서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육교사들이 약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지식을 보면, 보육교사의 평균은 .85을 보이고 있어, 일반여성의 평균점수 .63보다 높은 지식수준을 나타내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t=-4.285$, $p=.000$)를 보였다. 신고태도를 보면, 보육교사의 평균점수는 3.25, 일반여성의 평균점수는 3.10을 나타내며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t=-2.006$, $p=.046$)를 보였다.

신고태도의 점수가 두 집단 모두 중간 수준의 평균을 보여, 신고의 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도나 지식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신고태도가 중간수준을 보여, 앞으로 교사재교육시 신고의 의의나 신고후의 조치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신고의 지식, 신고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t-test와 ANOVA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종교·결혼여부·성격·혈액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자녀수·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1>와 같다,

<표 4-11> 연령에 따른 변인별 차이

N= 197

변 인	구 분	N	M	SD	F	p	DMR
심각성 인식	20대	54	4.18	.67	.856	.426	
	30대	82	4.28	.81			
	40대 이상	61	4.35	.53			
신고지식	20대	54	.77	.31	3.372	.036*	A
	30대	82	.82	.29			A
	40대 이상	61	.69	.32			B
신고태도	20대	54	3.20	.49	2.510	.084	
	30대	82	3.26	.54			
	40대 이상	61	3.07	.49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4.18이상의 평균을 보여, 전체적으로 심각성 인식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고지식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면, 30대가 .82의 평균을 보여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로 .77이며, 40대가 .69로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F=3.372, p=.036$)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uncan 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20대와 40대 이상, 30대와 40대 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육아관련 정보나 직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2,30대가 아동학대 관련 신고지식에서 40대 이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신고태도에서는, 30대의 신고태도의 평균점수가 3.26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자녀수에 따른 차이

<표 4- 12> 자녀수에 따른 변인별 차이

N=58

변 인	구 분	N	M	SD	t	p
심각성 인식	1명	18	4.31	.82	.339	.736
	2명 이상	40	4.23	.80		
신고지식	1명	18	.78	.32	.436	.665
	2명 이상	40	.74	.28		
신고태도	1명	18	3.44	.58	3.435	.001*
	2명 이상	40	2.96	.45		

자녀수에 따른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4-12>와 같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과 신고지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고태도에서 자녀가 1명

있는 조사대상자와 자녀가 2명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신고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t=4.36, p=.001$)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1명 있는 조사대상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태도에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보다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3) 학력에 따른 차이

학력에 따른 변인별 차이를 보면, 신고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3> 학력에 따른 변인별 차이

N=197

변인	구분	N	M	SD	F	p	DMR
심각성인식	고졸	40	4.16	.62	.665	.516	
	전문대졸	66	4.32	.67			
	대졸(재학포함)	91	4.29	.74			
신고지식	고졸	40	.62	.33	7.374	.001*	A
	전문대졸	66	.84	.26			B
	대졸(재학포함)	91	.78	.31			B
신고태도	고졸	40	3.14	.58	1.216	.299	
	전문대졸	66	3.12	.46			
	대졸(재학포함)	91	3.24	.52			

<표 4-13>를 보면, 아동학대인식과 신고태도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고지식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F=7.374, p=.001$)를 보였다. Duncan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과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고졸과 전문대졸, 고졸과 대졸이상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표 4-1>과 같이 보육교사의 91.1%가 전문대학 이상을 수료하였으며, 직업 특성상 보육교사 대부분이 전문대학이상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과목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신고지식의 평균에서 고등학교졸업보다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이 높은 지식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 4 절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방안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위, 아동학대발생시 신고기관과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어떤지를 알아보았다.

1.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로

<표 4-14>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로

단위 : 명

구 분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계	검증결과
	N(%)	N(%)	N(%)	
매스컴(TV,신문 등)	68(93.2)	69(75.0)	137(83.0)	$\chi^2=9.517$ $p=.002^*$
세미나, 교육 등	5(6.8)	23(25.0)	28(17.0)	
계	73(100.0)	92(100.0)	165(100.0)	

일반여성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로를 살펴보면, <표 4-14>와 같이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를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두 집단 모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여성의 93.2%인 68명이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8%인 5명만이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육교사는 75%인 69명이 매스컴을 통해, 25%인 23명은 세미나나 교육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이 신고제도를 알게 된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 ($\chi^2=9.517, p=.002$)를 나타냈다.

따라서 언론 등을 통한 매스컴 홍보를 활성화시킴과 더불어 부모교육이나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을 통해 일반여성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 하고 보육교사 등을 포함한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널리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기관

<표 4-15> 아동학대 신고기관

N= 161

구 분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계	검증결과
	N(%)	N(%)	N(%)	
경찰서나 파출소(112)	29(42.0)	24(26.1)	53(32.9)	$\chi^2=5.058$ $p=.080$
아동학대신고전화(1391)	33(47.8)	52(56.5)	85(52.8)	
기타	7(10.1)	16(17.4)	23(14.3)	
계	69(100.0)	92(100.0)	161(100.0)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일반여성은

68%가, 보육교사는 90%가 신고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표 4-12참조>, 신고기관을 살펴보면, 일반여성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에 신고한다고 47.9%인 29명이 응답하였고, 경찰서나 파출소(112)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42.0%인 33명, 기타에 10.1%인 7명이 응답하였고, 보육교사는 56.5%인 52명이 아동학대신고전화(1391)에, 26.1%인 24명은 경찰서나 파출소(112)등의 수사기관에, 기타에 신고한다고 17.4%로 16명이 응답하여 집단간 신고기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일반여성들은 수사기관(112)과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1391을 알고 있는 여성이 50%에 못 미치고 있고, 보육교사들도 아동학대신고전화(1391)에 대한 인지도가 56.5% 수준으로 2000년 9월 이후 신고전화가 개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절반정도만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신고전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

<표 4-16>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구 분	일반여성군	보육교사군
	M(순위)	M(순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4.84(5)	5.23(5)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4.07(2)	4.25(2)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3.57(1)	3.70(1)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변화	4.55(3)	4.51(3)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4.69(4)	4.64(4)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강화	4.95(6)	5.56(6)
기타	1.33(7)	1.12(7)

아동학대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로 가장 필요한 우선 순위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 모두 우선 순위의 항목들은 일치하고 있다. <표4-16>를 보면,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신고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에서 일반여성은 3.57의 평균이 나타났고, 보육교사는 3.70의 평균을 보여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1위로 응답하였고, 다음은 '신고시 즉각적인 개입'이 2위로 일반여성은 평균 4.07이 나타났고, 보육교사는 4.25의 평균을 나타냈다. 3위는 일반여성이 4.55, 보육교사는 4.51의 평균점수를 보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에 학대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소 및 보호체계의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포함해 20개소로, 광역시와 지방에 1개소씩(경기도와 강원도는 2개소)만 있어 지리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여도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를 통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신고의 활성화도 어렵다. 신고를 함으로서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지식 및 신고태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여성 95명과 구립 어린이집 교사 102명 등 총 1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절 결 론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심각성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학대 관련 신고지식과 신고태도에서 일반여성들이 보육교사들 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고기관을 알게된 경로에서도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은 체벌에 사용되는 도구나 체벌의 강도, 부모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의 기준이 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적용하는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기준인 상처의 정도와 만1세 미만의 영아에게 가하는 어떤 체벌도 신체학대로 보는 기준에는 두 집단 모두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손이나 회초리를 사용하여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신체학대가 아닌 훈육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체벌이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채옥(2002),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의 조

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체벌에 대해 일반여성과 같은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모가 유아를 학대하는 원인을 두 집단 모두 '가정 불화', '경제적 빈곤'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송희·지성애(2000),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의 학대자의 직업유형 중 무직이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과, 학대하는 아버지 가운데 거의 50%가 학대행위를 하기 1년전부터 실직되어 있었고, 12%는 학대행위 당시 무직이었다는 김혜영(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은 이뿐만 아니라 편모·편부 가정, 부모의 욕구불만,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종교, 체벌행동의 문화적 요인 등이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임을 인식하고 일반여성이나 보육교사들은 예방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들은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특별히 지도하거나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은 일반여성이나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일반여성 $M=4.22$, $SD=.67$, 보육교사 $M=4.32$, $SD=.71$)이 나타났으며, 유형별 심각성 인식에서는 두 집단이 흉기나 무기를 사용하여 아동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신체학대를 평균 4.8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을 늦은 밤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방임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신체학대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방임을 가장 낮게 인식한다는 정채옥(2002)과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의 조사결과와 같으나, 신체학대 증후

를 가장 잘 인식하고 성학대를 가장 낮게 인식한다는 Levin(198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 관련 신고지식을 보면, 연령대에서 20대와 30대에서 40대 이상과 유의미한 차이($F=3.372$, $p=.036$)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학력에서 전문대학 졸업이상과 고졸에서 유의미한 차이($F=7.374$, $p=.001$)를 보였다.

일반여성과 보육교사 두 집단의 신고지식은 보육교사가 .85의 평균을 보여, .63의 평균을 보인 일반여성과 신고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t=-4.285$, $p=.000$)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2,30대와 전문대학이상에서 학대관련 과목을 부수적으로 수강한 것과 관련이 있어, 마송희·지성애(2000)의 전체교사의 60.19%가 아동학대 관련 교과목을 '다른 교과에서 부수적'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신고태도에서는 자녀가 1명 있는 응답자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응답자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t=3.435$, $p=.000$)를 나타냈다.

두 집단의 신고태도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일반여성보다 보육교사의 신고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006$, $p=.046$)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 집단이 신고태도의 평균이 중간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신고제도는 잘 알고 있으나 신고절차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지윤(2000), 한영신(2000), 안재진(2002), 정채옥(2002)등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전의 연구결과와 시행후의 결과에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들의 복지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일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두 집단의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로가 일반여성의

93.2%, 보육교사들은 75.0%가 매스컴(TV나 신문)에 의해 알게되었다고 응답하여 신고제도를 알게된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x^2=9.517$, $p=.002$)를 보였으며,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학대신고전화인 1391에 신고한다는 응답자가 두 집단 모두 절반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 매스컴을 통한 신고제도와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는 물론, 부모교육이나 세미나,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신고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과 '신고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이시연(2000), 김지윤(2000), 유향미(2002)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즉, 피학대 아동을 보호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호체계 및 보호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학대아동의 가정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광역시와 지방에 1곳씩(경기도 강원도는 2개소씩) 총 20여곳의 아동예방센터가 있으나 보호시설의 부족과 관계법령의 미비 등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 2 절 제 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본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일반여성이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은 높으나 실제 신고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

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학대에 대해서만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동학대 관련 신고지식이나 신고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 등을 통해 현장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개입방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체벌이 자녀훈육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잘 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대부분을 매스컴을 통해 얻게 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결과에만 치중하여 보도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높아졌지만, 관련지식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신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매스컴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학대 아동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시의 한정된 지역에서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 성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김지윤(2000),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연구, 숙명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김재엽(1998), 한국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호, p.41-64
- 김성준(1987),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형모(2000), 아동보호체계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9월호, p. 38-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2000), 아동학대의 원인론-생태학적 관점,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
- 김혜영·장화정(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6권 제2호, p. 270-282
- 마송희·지성애(2000), 유아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20권 제1호, p. 117-137
- 박태수(2000),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학술지
- 보건복지부(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연구, 정책과제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2002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난호(1995), 아동이 보고한 학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이미영(2000),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200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 · 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서울: 법문사
- 이재연 ·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2호, p. 63-78
- 안동현 ·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건강연구” p. 6, 53-66
- 안재진(2002), 아동학대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만수(2000), 성장기 부부폭력 관찰경험, 성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정도가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향미(2002),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옥주(2000),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학술심포지움,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정채옥(200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30집, p. 298-325,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아동학대최종인식조사보고서

-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회” 창간호.
p. 156-177
- 채혜정(1994),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숙명여자대
학교 석사논문.
- 한국이웃사랑회(1999, 2000), 아동학대사례연구, 한국이웃사랑회출판부
- 한영신(2000),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 허남순(1999), 아동학대 발견 및 개입과정, 제 3회 한국아동학대예방센터 강
원지부 세미나 자료집
- 홍강의(2001), 센터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아
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p. 26,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Belsky, Jay.(1980), “Child Maltreatment: An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 Faller, K. C. (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A Manual of Interdisciplinary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 Gelles, R. J.(1973),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 a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ormation.” A. J.of Orthopsychiatry, 43
- Gil, D. G. (1971), “A Sociocultural Perspective on Physical Child Abuse”,
Child Welfare, Vol. 40, Number 7, 1971
- Helfer, R. & Kempe, H. (1974) “The Battered Chi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vin, P. G.(1983), "Teacher's Perception, Attitudes, and Reporting of
Child Abuse/Neglect", Child Welfare, 62(1), 14-20

Liu, Joseph L. Y. & Lau, Joseph T. F. (1999), "Conceptualization
reporting and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in Hong Kong",
Child Abuse & Neglect, 23(11), 1159-1174

경향신문, 2003. 5. 26

연합뉴스, 2003. 2. 4

www.moleg.go.kr

www.1391.or.kr

부 록

아동학대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유경숙입니다.

본 설문지는 일반여성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저의 논문은 물론, 이후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바람직한 대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학문적 연구외에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 교수 : 황진수
연구자 : 유경숙

1. 체벌(사랑의 때)과 신체학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아이의 연령에 따라
- ② 체벌의 강도에 따라
- ③ 체벌을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 ④ 신체부위에 따라
- ⑤ 상처의 정도에 따라
- ⑥ 부모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 ⑦ 아동의 잘못여부
- ⑧ 모든 체벌은 신체학대임
- ⑨ 기타 ()

2.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 ① 가정불화
- ② 경제적 빈곤
- ③ 무관심 무책임
- ④ 편모 편부 가정
- ⑤ 부적절한 양육태도
- ⑥ 지나친 기대
- ⑦ 아동기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
- ⑧ 기타 ()

3. 다음 내용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확대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보통 이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① 아동에게 “꿀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짓,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②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③ 아동에게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④ 아동을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⑤ 아동을 늦은 밤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아동이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⑦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⑧ 아동이 이유 없이 어린이집 등을 결석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⑨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⑩ 얼굴이나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⑪ 아동을 발로 차거나 깨무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⑫ 칼이나 흉기로 아동을 위협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⑬械대로 아동을 때리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⑭ 어른이 아동에게 음란비디오나 음란서적을 보여주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⑮ 아동이 싫어하는 데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⑯ 어른이 억지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9.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신고제도는 아동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 신고절차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해도 신고하는 것이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고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이나 비난을 받을까봐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신고를 할 때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신고를 함으로써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학대 문제예방과 치료를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우선 순위를 기재해 주세요.

- ① 신고자의 비밀보장()
- ②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 ③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 ④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변화()
- ⑤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⑥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강화()
- ⑦ 기타()

사회인구학적 조사

11.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이상

12. 귀하는 종교가

- ① 있다. ② 없다.

13. 귀하의 결혼여부는?

- ① 미혼 ② 기혼 (자녀수:)

14. 귀하의 성격은?

- ① 내향적 ② 외향적

15. 귀하의 혈액형은?

- ① A형 ② B형 ③ AB형 ④ O형

16.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학졸업(재학중 포함)이상

17. 귀하의 직업은?

- ① 교사 ② 일반여성

ABSTRACT

A Study on Perception and Accusation of Child Abuse - Focused on General Women and Preschool Teachers

Yu, Kyung Sook

Major in Social Welfare Studies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s objective is to attain the basic data needed to enhance the general women's and pre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and also needed to prevent it, through figuring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by comparing the levels of child abuse recognition and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ts reporting, of preschool teachers, who are the obligational reporters and of the general women who are not, according to the revised Child Welfare Law.

This study's theme is as follows

- 1) What is the general women's and preschool teachers' over all recognition about child abuse?
- 2) How high is the level of the general women's and pre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ts reporting?
- 3) What would be the ways to vitalize the child abuse reporting by

the general women and preschool teachers?

This study surveyed 197 persons, composed of general women and ward-established child house teachers.

This study's conclusions are as follows

- 1) The two groups replied that physical abuse and corporal punishment are differentiated by the tools and strength applied to them, and that punishing with hand and whip is a right method of parents' education and economic poverty is the main reason of child abuse, which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 2) The perception level of seriousness of child abuse appeared high in both groups, showing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but the preschool teachers'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of its reporting showed higher than the average women's
- 3) General women and preschool teachers got the most of information about child abuse problem through mass media and thus they had high level of perception on its seriousness, but they had medium range of understanding of reporting procedure and attitude, which suggested the need to change the recognition for preventing child abuse through seminars, repair education for teachers and parents education.